

선	기관의 장
람	



제 669 호

2005년 12월 30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90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91호(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92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2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93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2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94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일부개정조례) 2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95호(인천광역시남동구통 ·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30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53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일부개정규칙) 3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917호(수용재결신청물건열람공고(수립공원-건설화관간도로개설공사) 3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923호(식품위생법위반에따른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3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925호(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4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927호(2005-7회차압류차량고매공고) 4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929호(2006년남동구재활근로사업위탁시행자모집공고) 4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930호(운행차정밀검사과태료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4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931호(2005.7.1기준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토지가격조정결정 · 공시) 4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932호(2005.1.1기준개별공시지가조정결정 · 공시) 5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933호(동부초교외2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완료공고) 52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61호(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53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63호(입산통제구역고시) 54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64호(2005년도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55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5-2호(재산신고내역공고(3천만원이상의주식을보유하고있는자)) 56

회								
람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9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의 원칙) 정보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①인천광역시남동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남동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과, 보건소, 출장소, 동으로 한다.

③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주요사업의 자체평가 결과
6. 제10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8.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
 9.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구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
 11.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 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로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연직

위원중 직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 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주관부서인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정보 공개담당으로 한다.

제15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처리 결과통지)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청구인·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다른 규정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천광역시남동구정보공개심의
회운영규정(2000.2.19.훈령 제148호)은 폐지한다.

[별표]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공 표 방 법			
정보공개법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당해연도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업무계획(전부)	기획감사실	연1회	2월중	인터넷 또는 인쇄물
	예산편성현황	"	"	구의회 의결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기금운용계획 및 현황	"	"	"	"
	결산(전부)	경영재정과	"	결산승인일후 1개월 이내	"
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목록, 지출 금액 사용일시	총무과	월1회	10일 이내	"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측정 결과	전 부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위생과	월1회	검사결과후 즉시	"
4. 구정 주요통계조사 결과	전 부	지역경제과	수시	통계조사집계 완료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5.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기획감사실	연1회	2월중	"
6. 중장기 종합계획	중장기종합계획서	기획감사실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
7.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	"	"
	수수료조정계획서	"	"	"	"
	공공요금조정계획서	"	"	"	"
8.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결과물	해당부서	"	"	"
9.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진단결과 보고서	건설과	"	진단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구 분		공 표 방 법			
정보공개법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0.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건설과	수시	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 집행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1.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재난안전관리과	"	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 집행후 7일 이내	"
12.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공사계약 현황	해당부서	수시	15일 이내	"
13. 3,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와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	물품구매목록 계약내역목록	"	"	7일 이내	"
14.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심의결과	"	"	3일 이내	"
15. 구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	결과보고서	"	"	개최 후 7일이내	"

[별지 제1호 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 안전상정 요청서

수신 : 남동구정보공개심의회의위원장

참조 : 남동구정보공개심의회의간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담당부서의 장)

1.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2.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내용		
3. 통지서 수령 유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공개·부분공개·비공개)	년 월 일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년 월 일
4. 이의신청서의 취지 및 사유		
5. 담당부서의 답변내 용 및 검토의견		
6. 기 타		

첨부 : 1)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관계 입증자료 1부

[별지 제2호 서식](제15조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사 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12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3호 서식](제15조 관련)

회의록

				서 기	간 사	위 원 장	결 재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정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심의사항							
심의의결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접 수		심 의 안 건	심 의		담당부서	비 고
번 호	일 시		일 시	결 과		

□ 제 안 이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에 대한 명시 조항 (안 제5조)
-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을 명시하는 조항 (안 제6조)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조항 (안 제8조, 안 제10조)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대한 조항 (안 제1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9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의거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설치하는 남동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체육센터의 명칭은 “남동국민체육센터”라 한다.

②체육센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5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구민건강증진 및 구민체육 향상 사업
- 2.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사업
- 3.건전 여가선용 및 건전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4조(위탁운영 및 취소)①구청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체육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체육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위배 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운영지원 등) 체육센터 위탁 시 구청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징수 등) ①구청장(수탁관리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무의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④징수된 사용료는 체육센터 운영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50%를 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월분의 사용료를 반환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체육센터가 특정단체 및 특정인에 편중사용 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수탁관리자는 임의로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수 없다. 다만, 체육센터 사용에 있어 설비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설비 등의 보존시에 유익 비 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수탁관리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대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수탁관리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⑥기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①수탁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전 및 체육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및 운영)①체육센터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투자하여 설립된 공단이 수탁자가 될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수탁관리자는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제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①구청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체육센터에 관한 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 감사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수탁관리자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배치)수탁관리자는 전문 강습강사를 배치하여야 한

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 용 료(제6조제3항 관련)

(단위:원)

사용료 구 분		대 상	기본사용료 (1일 1회)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
수 영 장		성 인	3,500	53,000(주3회 기준)
		청소년	2,500	43,000(주3회 기준)
		어린이	2,000	38,000(주3회 기준)
체력단련장		성 인	2,700	40,000(주5회 기준)
		청소년	1,700	30,000(주5회 기준)
골프연습장		성 인	6,000	130,000(주3회 기준)
		청소년	5,000	100,000(주3회 기준)
체 육 관 등	개 인 사 용	성 인	1,700	
		청소년	1,200	
		어린이	700	
	대 관 료	체육경기	80,000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 추가.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기 타	150,000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실내골프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 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및 할인
 - ①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음.
 - ②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음.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 제안이유

-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남동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종합스포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 공공성과 수익성의 합리적 조정, 이용료의 적절한 책정 등으로 여가와 생활체육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은 물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남동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위치(안 제1조 및 제2조)
-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사업 (안 제3조)
-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 및 운영취소(안 제4조)
- 사용료 징수 및 반환(안 제6조 및 제7조)
- 수탁관리자의 의무(안 제8조)
- 회계·운영 및 감사(안 제10조 및 제1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9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 : 724명

3. 총 계 : 743명

제3조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집행기관 정원 중 사업별예산제도 수행에 따른 2명(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의 존속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제도 수행에 따른 2명(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의 존속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방행정혁신 기능강화업무 추진에 따른 2명(행정6급 1명, 행정9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현행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743	470	19	40	16	19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46	414	11	36	15	170
3급	1	1				
4급	5	3	1	1		
5급	41	16	2	5	1	17
6급	117	89	3	5	3	17
7급	188	133	5	7	4	39
8급	200	128		10	6	56
9급	94	44		8	1	41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1	1				
기능직 계	95	54	8	4	1	28
기능6급	3	3				
기능7급	5	4				1
기능8급	12	10	2			
기능9급	25	16	5	1		3
기능10급	50	21	1	3	1	24

□ 제 안 이 유

- '07년 본격시행 예정인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보급과 '08년 전면시행 예정인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편성을 위한 정원을 보강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 지방행정혁신 가속화 업무 기능강화 등을 위한 정원을 보강하여 자체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을 확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집행기관 정원(안 제2조 제1호)
 - 718명 ⇒ 724명(6명 순증)
 - 일반직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 총계 정원 (안 제2조 제3호)
 - 737명 ⇒ 743명 (6명 순증)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9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안 이 유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관련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연가일수의 조정(안 제18조)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축소함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9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소재지) [별표] 중

장수서창동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65-1”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3BL-2LT”로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관련 [별표3]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중 장수서창동 위치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65-1”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3BL-2LT”로 한다.

□ 제안이유

- 장수서창동 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2조(소재지) 별표중 장수서창동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65-1”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3BL-2LT”로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95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5조(통·반의 위·해촉) 제2항 후단에

“단,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 한다”를 삽입한다.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다만, 5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고, 3회에 해촉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같은 조 제3항 제4호 “통·반장이 사회적 물의를” 을 “통·반장에 대한 진정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5호 “3개월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를 “2개월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종 시책 추진에 역행하는 경우

7.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8. 민·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통·반장의 재위촉 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제2항)
- 해촉기준 개정 및 신설(안 제5조 제3항)
 - 5. 2개월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
 - 6. 각종시책 추진에 역행하는 경우
 - 7.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 8. 민·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5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53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중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에(대통령령 제17906호)
의하여”를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제1항에 의하여”로 한다.

제2조(정의)제1호중 “각호의 1에”를 “각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호 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으로 한다.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무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

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은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구청장 등이 정하는 공무원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2항중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제2항중 “직무관련자에게”를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로 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제1항중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4회(또는 월 8시간)를”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로 하고, 후단의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항중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1항중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를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항중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를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으로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항중 “이 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을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명칭의 현실화 반영(안 제1조)
-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부당지시를 하는 상급자에 대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를 월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대상을 간명히 함(안 제15조)
- 위반 행위의 신고에 있어 제3의 기관인 청렴위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확보 (안 제19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시 제공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여 청렴분위기 확산 도모(안 제21조)
- 행동강령 책임관의 업무 중 신고접수·조사기능을 추가하여 역할 강화(안 제23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917 호

수용재결신청물건열람공고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수립공원-건설회관도로개설공사」(대로 3-1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을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2. 2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수임자: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수립공원-건설회관간도로개설공사(대로3-11호선)
3. 사업의 규모 : L=1080m,B=25m~30
4. 위 치 : 사업의위치 :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485-17번지일원
5. 열람장소 : 남동구청 건설과
6. 열람기간 :2005.12.26-2006.1.9(15일간)
7.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소유자등에 대한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 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수립공원-건설회관간도로개설공사

연번	수용원토지의표시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면적	평균단가	보상액(원)	성명	주소(상대장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소
	동명	지번	(㎡)						
1	간석동	397-13	전 60.00 (현황 대지)	1,030,000	61,800,000	조영호	인천시남동구간석동399-16(인천시서구당하동원당지구108블럭3롯데마트) 금호에울림@306/805	지영자	인천시남동구간석동399-16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923 호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거소 불명으로 우편물 반송등 송달이 불가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2. 당 사 자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호	소재자	주 소
식품제조 가공업	80	원양식품	김수균	6405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1-12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502-5

3.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4. 청문사유 : 시설물멸실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제58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6.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2)
- 청문일시 : 2006. 1. 5 (목). 10: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6층 환경위생과 회의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7. 기 타 : 청문불참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종결

2005. 12 . 26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925 호

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택지개발지구 8블록의 미술장식품 심의결과를 문화예술평형법시행령 제2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심의일시 : 2005.12.23(금) 15:00
2. 심의장소 : 남동구청 4층 소회의실
3. 심의결과

[논현택지개발지구 8블록]

위 치		논현택지개발지구		
건 축 주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작품 번호	작 품 명	구분	심의결과	조 건 사 항
1	“성장의 시간”	조각	조건부 승 인	① 조형물의 설치 바닥면의 재질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설치할 것 ② 브론즈와 석재(머리부분)와의 연결방식 확인 및 석재와 석재의 횡방향 연결부분의 스틸앵커 볼트 보강 ③ 도면상으로 표시되지 않은 실개천의 폭과 조형물과의 연결부분의 안전성을 표시 도면 제출 要

2005. 12. 2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927 호

2005-7회차 압류 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 다 음 -----

가. 공매대상재산(차량)의 표시

연번	공매 차수	체 납 자		체 납 금 액	공 매 물 건	매 각 예정가격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6차	김 명 섭	650315-1042325	3,861,700	인천31려3250	300,000	등록원부 참조
2	3차	김 경 만	690610-1836029	669,170	인천31로9907	550,000	등록원부 참조
3	2차	장 재 일	600115-1018931	2,147,860	인천30려9863	1,800,000	등록원부 참조
4	2차	맹 홍 재	391219-1148913	312,300	인천32라4790	270,000	등록원부 참조
5	1차	박 행 남	730716-1221212	243,620	인천34려6378	8,000,000	등록원부 참조
6	1차	위 한	780731-1048011	479,890	인천32다7584	1,000,000	등록원부 참조
7	1차	인트코리아	120111-0214487	1,164,050	인천72다1623	2,500,000	등록원부 참조
8	1차	유 명	650714-2063426	3,193,620	25가1924	300,000	등록원부 참조
9	1차	강 복 연	740210-2141021	483,500	인천30가3997	1,000,000	등록원부 참조
10	1차	트라이맥스	120111-0120709	1,513,440	인천80더4954	1,000,000	등록원부 참조
11	1차	트라이맥스	120111-0120709	1,513,440	인천80거7843	500,000	등록원부 참조
12	1차	연 창 주	521209-1066812	5,467,760	인천80거7711	2,500,000	등록원부 참조
13	1차	신 승 천	760917-1183114	315,960	인천32다9609	100,000	등록원부 참조
14	1차	김 우 경	580818-1042221	1,842,270	인천33거6442	1,000,000	등록원부 참조
15	1차	이 순 실	600328-2148226	95,450	인천31루3954	5,000,000	등록원부 참조
16	1차	디와이에스엔터	120111-0292095	1,184,880	86무2731	7,000,000	등록원부 참조
17	1차	나 정 환	550411-1168223	604,890	인천31고9164	100,000	등록원부 참조
18	1차	이 동 철	400223-1143713	2,096,790	인천31가7835	100,000	등록원부 참조
19	1차	권 영 수	520922-1461013	6,692,290	인천33거5983	100,000	등록원부 참조
20	1차	구 용 호	630408-1334811	2,991,080	인천4머5700	100,000	등록원부 참조
21	1차	전 세 희	480619-1536316	3,013,440	인천30다5703	8,000,000	등록원부 참조
22	1차	김 용 숙	630317-2457819	3,099,880	인천2도8585	300,000	등록원부 참조
23	1차	연 창 주	521109-1066812	5,493,780	인천70나7989	1,500,000	등록원부 참조
24	1차	정 순 길	590809-2156331	2,023,920	인천31두7819	2,000,000	등록원부 참조
25	1차	박 전 해	661120-2810231	906,000	서울46노5737	5,000,000	등록원부 참조

나. 입찰신청 및 보증금 입금마감기간 : 2005. 12.27.~ 2006. 1. 9. 24:00 (14일간)

※ 유의사항

- 입찰등록기간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유찰시 2회차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공고(다음 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다. 입찰 참여마감일시 : 2006년 1월 9일 (월) 24시

라. 개찰결과 매각결정 일시 : 2005년 1월 10일 (화) 14시

(주)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 발표

※ 입찰참여 마감후 입찰보증금 입금여부 확인

마.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하며,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기준: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
(단독입찰 가능 단, 국세징수법 제66조 해당자 입찰 제한)

바.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http://automart.co.kr>) 입찰등록시 개인정보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입찰보증금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을 취소함.

입금계좌번호 : 한미은행 465-00095-258, 남동구청(본인명의로만 입금)

※ 주의 : 입찰신청후 약 15분정도 지난후에 입금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및 오후10시부터 오전9시까지)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입찰신청후 [입찰참여] 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사.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구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아.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처저가격임

자. 기타사항

※ 공매물건의 하자 및 표시착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본인 책임하에 현지확인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7,500원이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낙찰받은 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매수자 책임하에 이전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체납정리팀 차량공매담당 ☎032-453-242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2. 2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929 호

2006년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위탁시행자 모집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을 2006년도에도 민간위탁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위탁시행자를 공모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비영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협회나 조합의 형태를 갖춘 민간단체 남동구에 주소를 둔 단체(지부나 지사 포함)

2. 위탁방식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발, 내용 발굴, 예산 집행, 사업결산 등 사업전과정을 위탁

3. 위탁조건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지급

4.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05. 12. 29 ~ 2006. 1. 11(14일간)
- 접수기간 : 2006. 1. 12 ~ 1. 17 (4일간) ※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과 (☎ 453-2514)
- 위탁시행자 심의 및 선정기준 : 별도 통지
- 제출서류
 -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법인정관 및 당해연도 예산서 1부
 - 자활근로사업 계획서 1부
 - 법인(단체) 대표이사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법인(단체)의 고유 목적사업 내용 및 수행실적 1부.

5. 선정방법

남동구 자활기관협의체 심의위원회의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 결정

6.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서류를 무효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 사회복지과(☎ 453-2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930 호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가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5. 12.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5. 12. 29 ~ 2006. 01. 11
2. 의견제출기간 : 2006. 01. 25 일까지.
3. 송달내역 : 김종현(인천81나2434) 등 73건(별첨 명단 참조)
4. 기타 :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 032-453-2615) 끝.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사전통지 공시승달 세부내역(2005.9.20~11.18)

순번	등록번호	유요기간만료일	소유자명	주소(소유자)	지연일자	금액
1	인천81나2434	20050815	김종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7번지 57호 31동 3반	87	300000
2	인천33다1553	20050720	한상한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592번지 5동	87	300000
3	인천31노4719	20050722	조상철(공제연제)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52번지 3동	87	300000
4	인천4가9915	20051005	황재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60번지 7호 상주주택 8동 지1호 6동 2반	4	20000
5	인천32마2424	20050604	이승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원동 111번지 102호 10동 2반	87	300000
6	86도3943	20050622	통해삼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7번지 3호 남동공단 958 4L	87	300000
7	인천31나6131	20050719	김남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4번지 24호 46동 1반	87	300000
8	인천72나4612	20050622	하이테크종합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3번지	87	300000
9	인천31누7659	20050710	하이테크종합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3번지	87	300000
10	인천70나2661	20050930	김연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19번지 1호 1동 6반	15	20000
11	인천32가6247	20050529	공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원동 564번지 1호 노원주공아파트 114동 102호 23동 7반	87	300000
12	인천2모1770	20050711	이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원동 564번지 1호 노원주공아파트 101동 503호 20동 2반	87	300000
13	01도8485	20050529	박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6번지 구월주상복합 414호 12동 5반	87	300000
14	인천35가1173	20050526	(주)한양자동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6번지남동공단 5881L	87	300000
15	인천4가9953	20050829	김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78번지 1호 24동 1반	46	90000
16	인천32마9292	20050724	(주)메직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번지 516호	57	150000
17	인천31모5810	20050617	이인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8번지 45호 29동 5반	87	300000
18	인천31도2110	20050618	박진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13번지 3호 18동 2반	87	300000
19	인천30마2873	20050605	백경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2번지 5호	87	300000
20	인천83가8423	20050612	(주)서강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2번지 5호 송민빌딩 303	87	300000
21	인천32가7382	20050831	백철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번지 26호 해창아파트 2동 305호 22동 2반	9	20000
22	인천33나5442	20050604	엔에스정공(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2번지 14호 남동공단 2단지 122B-15L	87	300000
23	인천30누7143	20050608	한국자동화(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5번지 2호	87	300000
24	인천3모5027	20050702	(주)새로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7번지 12호 남동공단 156-13	87	300000
25	인천30다1939	20050621	김문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01번지 3호 21동 3반	87	300000
26	인천30누5294	20050823	신영금속(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5번지 2호 남동공단 115831T	26	20000
27	인천30투4628	20050715	(유)상진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6번지 5호	87	300000
28	인천80가1668	20050713	(주)은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8번지문화빌딩 501	87	300000

순번	등록번호	유료기간만료일	소유자명	주소(소유자)	지면일자	금액
29	인천30북2229	20050711	박정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61번지 2호 25동 3번	87	300000
30	인천34노4073	20050612	장영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9번지 당방마을아파트 103동 506호 21동 1번	87	300000
31	인천83나8990	20050910	김인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3번지 37호 인성빌라 3동 302호 4동 2번	16	200000
32	인천8가7004	20050628	(주)성지환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번지 10호 브이아이피오피스텔 707호	87	300000
33	인천31마7164	20050630	(주)카게이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0번지 12호 3층	87	300000
34	인천2도7176	20050628	(주)태원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3번지 12호	87	300000
35	인천30다12527	20050722	(주)상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4번지 5호	87	300000
36	인천31부4041	20050612	김진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5번지 3호 1층호 3동 4번	87	300000
37	인천31다7113	20050530	홍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번지 10호 가산한들빌 D동 401호 43동 3번	87	300000
38	인천33나6302	20050617	박상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4번지 햇빛마을복산아파트 108동 1206호 27동 4번	87	300000
39	73노3406	20050909	지연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82번지 11호 다가주택 101호 16동 5번	26	20000
40	91지2386	20050907	이종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0번지 1호 스카이다운 801호 9동 1번	30	20000
41	인천2도7396	20050617	박래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90번지 16호 13동 3번 203호	87	300000
42	인천30가8389	20050623	(주)보성환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73번지	87	300000
43	인천80라9246	20050703	(주)칠레트상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82번지 2호 101호	88	300000
44	인천31나5375	20050702	한수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7번지 주공아파트 502동 1401호 21동 1번	87	300000
45	인천1라1988	20051011	이유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번지 1호 성우비오빌 819호 17동 7번	6	20000
46	인천80나5134	20050722	김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번지 1동 3번	87	300000
47	인천30노8052	20050613	두성건설산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3번지 2호	88	300000
48	인천33가1413	20050614	강준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42번지 2호 효성오피스텔 609호 36동 3번	87	300000
49	인천33다2774	20050904	이정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371번지 9호 오복빌라 14동 202호 24동 4번	5	20000
50	인천1로6349	20050605	유원익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59번지 3호 우신아파트 가동 301호 5동 5번	87	300000
51	인천80가19482	20050723	황두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번지 89호 12동 3번	87	300000
52	인천73고5128	20050720	상원산업종합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8번지 1호 대진빌딩202호	87	300000
53	인천86바8973	20050712	권영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번지 4호 시티오피스텔 104호 35동 2번	87	300000
54	인천80나15020	20050717	(주)성지환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번지 10호 브이아이피오피스텔 707호	87	300000
55	인천2도4143	20050719	(주)천하통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번지 2호	87	300000
56	인천31부3871	20050707	이덕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3번지 23호 상지다세대주택 4동 202호 3동 1번	87	300000
57	86주1270	20050811	이항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7번지 5호 정은아파트 501호 1동 2번	12	20000
58	인천80나1701	20050712	다림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3번지 6호 정은빌딩 302호	87	300000
59	인천4가4723	20050831	최대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46번지 4호 1층호 10동 8번	27	20000

순번	등록번호	유효기간만료일	소유자명	주소(소유자)	지면일자	금액
60	인천31노8479	20050702	임원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87번지 동남아파트 1동 105호 15동 1번	87	300000
61	인천30노8408	20050616	(주)아쿠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8번지 7호 남동공단 67블럭8호트	87	300000
62	인천31니8681	20050602	권민준	인천광역시 중구 용남동 15번지 12동 1번 한빛빌라 B02호	87	300000
63	인천31니8681	20050711	배동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번지 315호 7동 2번	87	300000
64	인천3모8982	20050718	서정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번지 24호 1층호 26동 1번	87	300000
65	73노3404	20050630	대우퍼니처(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천동 623번지 10호	87	300000
66	인천70리1960	20050630	대우퍼니처(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천동 623번지 10호	87	300000
67	인천30리3662	20050720	공용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83번지 8호 12동 2번 유원마을신동아파트 101동 605호	87	300000
68	인천2고8201	20050607	생영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8번지	87	300000
69	26조7980	20050717	박용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3번지 3호 35동 5번	87	300000
70	인천31노2802	20050628	김정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9번지 5호 7동 2번 고려빌라 202호	87	300000
71	인천31부8594	20050629	노인성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사동 1256번지 3호 3동 4번	87	300000
72	98노3046	20050609	유재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508번지 2호 2동 2번	87	300000
73	인천80기2959	20050920	조동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2번지 34호 1동5번	3	2000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931 호

2005.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가격조정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05. 12.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결정 · 공시

- 대 상 토 지 : 2필지 (가격조정 토지) 【내역 별첨】
- 기 준 일 : 2005년 7월 1일
-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것인 바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032)453-2482, 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7.1기준 이의신청가격조정내역

(단위 : 원/㎡)

연번	소재지	2005.7.1기 준 결정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지가	부동산평가위 원회심의결과	조정지가	비고
1	만수동 2-4	90,300	79,800	79,800	79,800	하향 조정
2	만수동 2-19	173,000	133,000	133,000	133,000	하향 조정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932 호

200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합니다.

2005. 12. 3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결정·공시

- 대 상 토 지 : 고잔동 512-12
- 정 정 년 도 : 2005년 1월 1일기준
- 결 정 내 용 : 개별공시지가 지번정정

(단위:원/㎡)

당초 지번	정정 지번	개별공시지가	비 고
고잔동 512-24	고잔동 512-12	643,000	

※ 문의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32)453-2723]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933 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부초교지구, 모래마을지구, 공원촌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도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완료 공고합니다.

2005. 12.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내용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비 고
동부초교지구	만수3동 109번지 일원	54,561	'93. 10. 18 ~ '05. 12. 31	
모래마을지구	구월4동 349번지 일원	38,934	'94. 09. 15 ~ '05. 12. 31	
공원촌지구	간석3동 37번지 일원	53,809	'93. 10. 25 ~ '05. 12. 31	

□ 공고장소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453~2963)
- 만수3동사무소 (☎ 453~5420)
- 구월4동사무소 (☎ 453~5280)
- 간석3동사무소 (☎ 453~534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 2005 - 61 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소3-1호선, 소3-1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964), 건설과(☎032-453-2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12. 2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변경)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도 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143.8	소3-5호선	도림동 434-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230	간석동 613-8	간석동 762-1	일반도로		1992. 12.28	
변경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12	간석동 613-8	간석동 762-1	일반도로			
	소로	3	15	6	특수 도로	118	간석동 613-8	간석동 762-1	보행자 전용도로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3-15호선 (국지도로) L=230m	소3-15호선 (국지도로)	B=6m, L=112m	- 도로 L=230m 구간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행자전용 도로(L=118m)로 변경 결정
	소3-15호선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	B=6m, L=118m	

-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 2005 - 63 호

입 산 통 제 구 역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내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법 제97조에 의거 등산로를 제외한 임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기 바라며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005. 12. 3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입산통제기간 춘기 : 2006. 2. 1 ~ 2006. 5. 15(104일간) / 추기 2006. 10. 20 ~ 2006. 12. 20(62일간)

동 별	지 번	구역 면적	비 고
계	186필지	509ha	
만수2동	산1-1, 1-2, 1-3, 19, 21-3, 32-1, 32-2, 32-3, 32-13(9필지)	73ha	만수아파트 뒷산
만수3동	산1-4, 2-1, 2-2, 3-1, 6-2(5필지)	38ha	영풍광업 뒤 산 동인천교 뒷 산
만수4동	산40-1, 42-1, 43-1, 44-1, 68, 69, 70, 71-1, 71-5, 71-6, 71-7(11필지)	38ha	만수아파트 뒷산
간석3동	산27-1, 26-1, 32-1, 21, 20-1, 17-1, 18, 19-23, 19-8, 19-3, 17-4, 17-6, 17-3, 26-2, 28-1, 36-1, 36-2, 37-10, 33, 23-1, 35, 34-1, 30-1, 28-4, 28-6, 28-2, 28-3, 28-9(28필지)	66ha	약사사 및 영풍광업 뒷 산
장수서창동	산147, 146-1, 148, 174-3, 169, 160, 161-1, 162-1, 166, 163, 161, 164, 132-4, 132-3, 135, 137, 154, 152-1, 168-1, 138-2, 138-1, 141, 142, 144, 143, 172, 173, 149, 151, 59, 156, 157, 155, 174-1, 174-2, 137, 135, 132-1, 132-3, (39필지)	75ha	국골산
장수서창동	산68-3, 65-1, 64-2(3필지)	29ha	소래산
장수서창동	산83, 84, 86, 93, 82-3, 79, 80-1, 78, 77-3, 87, 81(11필지)	29ha	상아산
장수서창동	산113-1, 109-1, 109-2, 109-4, 95, 96, 97-1, 106-1, 107-1, 110, 111, 112-1, 112-2, 85, 90, 89, 88, 75-5(18필지)	43ha	관모산
운연동	산74-7, 76, 78-1, 77, 79-1 75(6필지)	39ha	관모산
장수서창동	산40, 39, 36-1, 36-2, 34-1, 35, 42-1, 43-1, 44-1, 6, 44-3, 45(12필지)	14ha	관모산
수산동	산11-1, 11-2, 6-1, 11-4, 29-1, 41-1, 39-1, 39-2, 40-1, 45-1, 45-3, 9, 45-2, 45-12, 2, 45-9, 46-1(17필지)	19ha	소래선 주변
남촌도림동	산2, 4-2, 18, 34-1, 23, 29, 37-1, 37-4, 32, 37-2(10필지)	16ha	소래선 주변
남촌도림동	산60-6, 56-1, 57, 49-2, 56-2(5필지)	13ha	오봉산
남촌도림동	산2, 19-4, 28-1, 27-4, 30-1, 24, 23-1, 36, 25, 26-1, 27-1, 30-5(12필지)	17ha	오봉산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 2005 - 64 호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중 다음과 같이 정정결정· 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I .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05. 1.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33-1
3. 결정공시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II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남동구청 세무과 과표팀)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5-2호

주식백지신탁제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공개대상자 중 3천만원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자의 신고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5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남동구의회	직위(직급)	의 원	성 명	김 상 호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 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 우 자	한글과컴퓨터	7,900	매 각	94,800	05.11.25	CJ투자증권
“	렉스진바이오	800	매 각	9,660	05.12.16	“
	-	이 하	여 백	-	-	-